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7. 21.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7월 10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0. 7.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제명을 반영하고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안 제1조~제2조)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제2조, 안 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추어 인용 법령명과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규정에 맞추어 법령명과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44 호
----------	---------

제출연월일: 2020. 7.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제명을 반영하고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안 제1, 2조)

-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 2, 5, 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0. 6. 4. ~ 6. 24./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으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장”을 “제2장제2절”로 하고 제4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하며 제3항 중 “제30조”를 “제42조”로 하고 제4항 중 “제32조”를 “제44조”로 하며 제5항 중 “제33조”를 “제45조”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제51조”를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u> 」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u> 」 제18조-----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 <u>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 ----- ----- ----- 「 <u>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u> 」 ----- ---- 제11조 ----- -----.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3장에서 정하는 규제특례 중 이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2. ----- ----- ----제2장제2절-----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 ----- ----- -----제14조제1항----- -----.

제5조(규제특례사항)

① 구청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사증(事證) 발급 관련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 등의 도로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관련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에게 법 제3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④ 구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5조(규제특례사항)

① -----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② -----

-----제33조-----

-----.

③ -----

-----제42조-----

-----.

④ -----
-----제44조-----

[illegible]

⑤ _____

제 45 조

_____ .

제6조(규제특례의 사후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제 16 조

_____ .